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31,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조세 협정 지지 철회가 BEPS 2.0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

2025 년 1 월 20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첫날에 글로벌 조세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의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 년 10 월, 바이든 행정부는 135 개 이상의 관할 지역과 함께 국제 조세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조세 협정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이 이익을 저세율 또는 무세율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제 가능한 비용을 통해 세금 기반을 낮추는 전략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방지하기로 목표합니다. 2025 년 1 월 20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첫날에 글로벌 조세 협정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글로벌 조세 협정 적용 배제:** 재무부 장관과 주 OECD 미국 대표부는 이전 행정부가 OECD 글로벌 조세 협정과 관련하여 한 모든 약속이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OECD에 통보한다.

-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은 OECD가 주도하는 15개 BEPS 대책 중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필라 해결책(Two Pillar Solution)을 의미합니다.
- 2) **차별적, 역외 과세(Discriminatory, Extraterritorial Tax)로부터 보호 조치:** 재무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와 협의하여, 미국이 당사자인 조세 조약에 위반하거나 미국 기업에 역외 과세 또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세법 규정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60일 이내(지난 3월 21일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제출한다.
 - 3) **미국 세법 제891조에 따른 조사:** 재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협의하여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또는 역외 과세를 조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필라 1(Amount A)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필라 1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에 공개된 다자조약(Multilateral Convention, MLC)이 발효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동의 없는 이 다자조약의 최소 참여 국가 요건(Critical Mass)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 IT 기업들에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이미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필라 2의 소득산입보완규칙(The Under-Taxed Payment Rule, UTPR)은 한국, 일본, 캐나다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약 140개 국가에서 도입이 예정되거나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한국과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을 경우, 한국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부분에 대해 UTPR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이러한 과세에 강하게 반대하며, 보복 과세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필라 2 제도를 재검토하고, 향후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제도 개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세(DST) 및 소득 산입 보완 규칙(UTPR)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조세 조약 위반 조사 및 시정 요구:** 미국은 자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을 근거로, 상대국이 도입한 DST 나 UTPR 이 조세 조약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미국 세법 제 891 조에 따른 과세:** 이 조항은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차별적 과세를 받을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외국의 세금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세법 제 891 조가 실행될 경우 미국 내 위치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파견간 국내 직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두 배로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 3) **미국 무역법 제 301 조에 따른 조치:** 미국 무역대표부는 외국의 차별적 법과 정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무역법 제 301 조 실행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DST 에 대해 무역법 제 301 조 조사를 시작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세법 891 조의 실행은 최후의 조치로 사용될 것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협의된 OECD 의 필라 1, 2 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각국에서 시행 또는 도입이 예정된 디지털 서비스세와 필라 2 의 소득 산입 보완 규칙(UTPR)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 월 21 일 조세 조약 위반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보고서는 오는 4 월 1 일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행정부가 해당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추가 지침을 발표할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국내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자사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논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대비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4-국제세원-2498, 2025.03.07

제목: 보세창고 이용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

1. 사실관계

- 국내은행 런던지점은 체코법인 甲으로부터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으며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체코 정부에 원천세를 납부함
- 해당 이자소득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 후 본점인 국내은행의 과세표준에 반영됨

2.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부품 보관용역 계약을 체결, 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창고업자는 부품 입·출고 및 보관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계열사로 하여금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5. 관련 사례

- 사전법규국조-506, 2022.7.27.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444, 2009.8.28.
 -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46522-55, 2003.5.26.
 -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03 관세

美 트럼프 주요 관세 정책 및 관세청 조사 동향

1. 개요

-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 정책과 관세청의 조사 동향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2. 트럼프 주요 관세 정책

1)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25% 부과안 발효 (3/12일)

- **(부과 내역)** 트럼프 행정부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1) 철강 (2) 알루미늄 (3) 철강,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파생상품) 일부에 대해 25%의 관세 확대 적용 → 미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3/12일부터 발효
- **(부과 대상)**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철강, 알루미늄 및 총 258개의 파생제품*
(*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 부과하는 품목 172개 및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 철강, 알루미늄의 함량 가치(value of content) 기준으로 25% 관세 부과하는 품목 87개 (중복된 8708.10.30호 제외)
- **(시행)** 함량 가치(value of content) 평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불확실성으로 파생상품의 함유량 가치 신고에 대한 혼란 유발 → 수입자 개인이 생산 기록과 자체 명세서 자체 평가할 것이 요구됨
- **(현지 반응)**
 - ① Ford (자동차): 대표 모델 F150 픽업트럭 중량의 절반이 금속이며, 알루미늄은 모두 캐나다산으로 관세 부과 대상으로, 특히 미국산 알루미늄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② 건설용 기계 부품: 철강재는 주로 미국산을 사용하나, 조립시 사용되는 부품(파생상품에 해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내 파급 예상

2) 상호 관세 시행안 발표 예상 (4월 초 예상)

- **(도입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등 불균형한 통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관세 도입을 추진 중으로, 주요 교역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차등 적용하여 무역적자 해소 및 무역 공정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평가)**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보다 미국의 관세율을 상대국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가 아닌 보호주의 강화에 가까운 정책으로 평가됨
- **(관세율표)** 현재 미국의 조화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이하 HTSUS)는 모든 수입품목을 HS코드 10자리로 식별하며, 각 관세율은 3개 열(Column)로 분류됨

- (1) 일반관세(Column 1 General): WTO 회원국 대상 MFN 관세율
 - (2) 특혜관세(Column 1 Special)*: FTA 및 개도국 특혜 등 협정상 인화된 관세율
 - (3) 차별관세(Column 2)**: 북한, 쿠바, 러시아 등 비 WTO 국가 대상 차별관세율
- (*)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에 있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세율
 (**) NTR에서 제외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세율

〈 美 조화관세표(HTSUS) 녹차(HS 0902) 관세율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Basic Revision 8 (2021)
 Annotated for Statistical Reporting Purposes

Heading/ Subheading	Stat. Suf- fix	Articl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Rates of Duty		
				1 General	2 Special	3
0902		Tea, whether or not flavored:				
0902.10		Green tea (not ferment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0902.10.10		Flavored.....		6.4% ¹⁾	Free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 4.27% (JP)	20%
	15	Certified Organic.....	kg			
	50	Other.....	kg			
0902.10.90		Other.....		Free ²⁾		Free
	15	Certified Organic.....	kg			
	50	Other.....	kg			

- **(예상 부작용)** 상호관세 시행으로 국가별 개별 관세율 적용 시 기존 3개 열(Column)을 국가 수만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관세기구(WCO)에 속한 186개국과 HS 코드 10자리(17,000여 개 품목) 조합 시 약 310만 개 이상의 개별 관세율 관리가 필요함 → 이에 대해 美 관세청(CBP)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며, 유지 및 운영 측면에서 관료적 악몽이라고 비판
- **(협정 위반 가능성)** 상호관세 정책은 국가별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994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조(최혜국대우) 및 제2조(양허관세)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즉, 미국이 상기 협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자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

3. 관세청의 조사/단속 동향

1) 외환조사 확대

- **(개요)** 관세청은 2월 18일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였음
- **(단속 강화 방안)**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은 분야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1) 외환검사 활성화: 기존에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고 실지검사와 서면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 (2) 가상자산 대응: 가상자산 범죄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
 - (3) 무역 경제범죄 단속 강화: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공공재정 편취,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등의 범죄에 대해 테마별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정보 입수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계획
 - (4)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 억제: 환전소에 대한 정기·기획검사를 실시하고,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
 - (5) 신종 외환범죄 수사역량 확충: 무역거래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사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

2)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 **(개요)**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 또는 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
 - (**) 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 제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유통 사례 적발

- (단속 대상)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할 예정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